

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2 ~ 0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2. 02. 10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재난관리기금을 지역특성에 맞게 세부 용도를 조례로 정하고,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대비·복구활동은 물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관한 군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함(안 제3조)

-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
⇒ 100분의 15 이상

나.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함(안 제6조)

-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,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보수·보강, 긴급구조능력의 확충,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,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만 재난관리기금 사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8조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, 제7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작성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2012.1.4. ~1.24.)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100분의 30 이상” 을 “100분의 15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6조(기금의 사용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 - 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 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다. 재난피해시설(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- 라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- 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 - 바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2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제7조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1항제6호”를 “영 제74조제1호마목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 군수는 <u>영 제74조제1항제6호</u>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 -----<u>영 제74조제1호</u>마목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,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 및 제75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「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」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재 난 관 리 과 장 이 동 순